

석학교수 규정

시행 : 2017. 6. 28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 석학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석학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어 교내 전임교원 중에서 선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
② 석학교수로 임명되는자의 학술성과가 인류사회 또는 과학세계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여 국내·외에서 탁월성을 인정받은 경우 미원 청호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3조(자격) 석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노벨상 또는 노벨상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수상한 자
2.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자
3. 특정분야의 연구실적이 현저하여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에 특히 공헌할 수 있는 자
4. 기타 석학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4조(임용절차) 석학교수는 소속 대학(원)장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석학교수의 임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② 총장은 석학교수의 임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구비서류) ① 소속 대학(원)장이 석학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구비를 원칙으로 한다.

1. 교육 및 연구업적의 공적개요
 2. 전임교원의 추천서
 3. 이력서
 4. 연구실적목록
-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임무) 석학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.

1. 강의 또는 연구
2. 특별 강의 및 세미나
3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제8조(연구결과물의 귀속) 석학교수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처우) ① 석학교수의 급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② 석학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월정연구비
2. 특정과제 연구비
3. 대학원생 등 연구보조인력

제10조(보칙) 교무처장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